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안번호	제25호	제 출	서승필 의원 등 6명
제 출 일	2024. 3. 13.	회 부 일	2024. 3. 13.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에 따라 지급되는 의원 의정 활동비를 논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액(제2조관련) 현행화[별표1]

구 분	지급기준	의정활동비	비 고
개정전	의원 1인	1,100,000원	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0,000원 보조활동비 월 200,000원
개정후	의원 1인	1,500,000원	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,200,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,000원

3. 검토의견

- 가. 2024. 2. 29. 논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같이 의정활동비를 개정하는 사안으로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안번호	제26호	제 출	서승필 의원 등 5명
제 출 일	2024. 3. 13.	회 부 일	2024. 3. 13.

1. 제안이유

논산시의회 입법 및 의회 운영 등을 위한 의정활동이 복잡·다양화됨에 따라 입법·법률 고문의 정원을 증원하여 다양한 정책 제안 및 자문 등을 통해 전문성 및 적법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입법과 법률 고문을 “2명”에서 “3명”으로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입법·법률고문의 수를 “2명”에서 “3명”으로 증원함(안 제3조)

3. 검토의견

가. 본 개정안은 의회 입법·법률 고문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다 적법한 정책 자문 등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안번호	제27호	제 출	서승필 의원 등 5명
제 출 일	2024. 3. 13.	회 부 일	2024. 3. 13.

1. 제안이유

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의원의 창의적 정책개발 활성화 및 연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연구단체 등록 사항 조항 추가(안 제4조)
- 나.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사항 변경 및 추가 (안 제6조)
- 다. 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사항 변경(안 제9조)

3. 검토의견

- 가. 본 안건은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을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연구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여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